

[별표 3]

대지 안의 공지 기준(제24조 관련)

1.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
대상 건축물	각 부분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
가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)	•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 •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3미터 이상
나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)	•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 •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3미터 이상
다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,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	• 3미터 이상
라.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,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	• 3미터 이상
마. 공동주택	• 아파트 : 3미터 이상 • 연립주택 : 2미터 이상 •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
바. 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	• 1미터 이상 (한옥의 경우 처마선 및 외벽선 1미터 이상)

※ 각 부분이란: 벽, 기둥, 발코니, 노대, 처마끝 등의 외부면을 말한다.

2.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
대상 건축물	각 부분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
가.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(공동주택을 제외한다)	• 1미터 이상
나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)	• 준공업지역 : 1미터 이상 •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1.5미터 이상
다.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,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. 다만,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.	• 1.5미터 이상
라.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,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. 다만,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.	• 1.5미터 이상
마. 공동주택(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와 드렌처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)	• 아파트 : 3미터 이상 • 연립주택 : 1.5미터 이상 •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
바. 기타 모든 건축물	• 0.5미터 이상 (한옥의 경우 처마선 및 외벽선 1미터 이상)

※ 각 부분이란: 벽, 기둥, 발코니, 노대, 처마끝 등의 외부면을 말한다.